

[붙임2]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5- 호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. 3. 3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과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설치·운영, 위원의 구성, 제척사항 등을 규정하고, 수탁기관의 지도·점검, 성과평가, 감사 등 조항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변경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
→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- 나.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(안 제4조)
- 다. 민간위탁 추진 시 구의회 동의에 대한 규정 (안 제5조)
- 라.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을 위한 운영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(안 제6조)

- 마.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(안 제7조 ~ 제9조)
- 바.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(안 제10조)
- 사.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, 협약체결,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(안 제11조 ~ 제14조)
- 아. 지도·점검 및 감사,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(안 제16조 ~ 제19조)
- 자. 위탁의 취소 및 재위탁에 관한 규정 (안 제20조 ~ 제21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참조 : 정책기획담당관, 주소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<연희동 168-6>, 우 : 120-703), 전화 : 330-1332, FAX : 330-1442, E-mail : chanby00@sdm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(규칙)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  
【<http://www.sdm.go.kr/>】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